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9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조은희 · 조승환 · 이성권
이만희 · 서천호 · 한지아
강명구 · 김용태 · 박정하
주호영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엽제로 인한 희귀진단 발생 가능성과 장기적인 건강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고엽제에 노출된 본인과 자녀를 넘어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유전 가능성에 대한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과학적·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 제7조의11 신설, 제29조제1항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세환자”를 “2세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세환자”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그”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그”로 한다.

9.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을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세환자”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세환자”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세환자”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다음”으로, “영향”을 “영향(고엽제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세환자”를 각각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u>2세환자</u> 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 ----- ----- <u>2세환자</u> <u>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u>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⑦ (생 략)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u> <u>자</u>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생 략)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

-----2세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1. ~ 8. (현행과 같음)

9.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고엽제후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
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
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
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그---

-----.

-----.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

-----사람(이하 “수당

지급 대상자”라 한다) 및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수당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

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
우자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

-----2세환자,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
-----2
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

배우자-----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

-----다음-----

-----영향(고엽

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

제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을
포함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 무하고 전역한 자 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람의 자녀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 엽제후유증 <u>2세환자</u> 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 ----- ----- <u>2세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u> ----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u>2세환자</u>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2. ----- ----- <u>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배우자</u>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